

의안번호	2210673
의 퇴 인	이양수 의원
회 답 일	2025. 6. 24.
추 계 번호	25G306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,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,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는 2026년 3,473억원, 2029년 6,637억원 등 2026년에서 2029년까지 4년간 총 2조 9,973억원(연평균 7,49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소득세 및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72조)	-	-3,620	-3,738	-3,859	-11,217	-3,739
조합 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8조의5)	-282	-507	-507	-225	-1,521	-380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89조의3)	-3,192	-5,745	-5,745	-2,553	-17,235	-4,309
합계	-3,473	-9,872	-9,990	-6,637	-29,973	-7,49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
2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-
3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2조 (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)	○	
2	안 제88조의5 (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)	○	
3	안 제89조의3 (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징수기준을 적용하여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추계
 - － 개정안에 따른 2026년 법인세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징수기준으로 2027년부터 발생할 것으로 가정
 - 향후 과세표준 구간별 조합법인의 분포는 2023년 신고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 - －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와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를 적용한 경우의 산출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산출
 - － 조세지출예산서상 실적을 추계에 활용하되,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일반법인의 세율이 인하되었음을 감안하여 2023년 이전 감면실적을 현행 세율에 맞춰서 조정하여 활용
- ※ 단, 2023년 조합법인의 중간예납분은 직전연도 세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
-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의 감면 실적의 증가추세가 유지된다고 가정
 - 최근 5년(2020~2024년)간의 조정실적의 증가 추세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

□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29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□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-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하여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
-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 평균 실적규모를 바탕으로 하여 2026년부터 2029년까지의 세수효과 추계
 -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의 향후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조세지출의 최근 2년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및 저율과세 적용기간 변화로 인해 현행 대비 적용 세율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(2026~2029년)에 대하여 세수효과 추계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

(1) 제도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개요) 농업협동조합·수산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산출시 일반법인과 달리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여 세무조정을 간소화하고,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특례
 - 일반법인과 달리 조합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시 당기순이익에서 기부금, 접대비 등 8가지 항목만을 손금불산입하고, 9~12%의 저율과세 적용

[표 2] 일반법인과 조합법인 과세체계 비교

		일반법인	조합법인
적용대상		일반법인	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, 중소기업협동조합, 산림조합, 연연초생산협동조합, 소비자생활협동조합
과세표준		당기순이익 + 익금산입 - 익금불산입 - 손금산입 + 손금불산입 =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비과세소득 - 소득공제 = 과세표준	당기순이익 + 손금불산입(기부금 등 8개 항목 ¹⁾) = 과세표준
과표 구간별 세율	2억원 이하	9% ²⁾	9%
	2~20억원	19% ²⁾	
	20~200억원		12%
	200~3,000억원		
	3,000억원 초과	24% ²⁾	

주: 1) 기부금, 접대비, 대손금, 대손충당금, 과다경비, 업무무관비용, 지급이자,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
 2) 2022년 세법개정 이전에는 각각 1%p씩 상향된 세율 적용

- (특례실적)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은 2020년 3,271억원 수준에서 2023년 5,113억원으로 증가한 후, 2024년 3,289억원 수준
 - 2024년 실적 감소는 법인 실적의 부진 외에도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일반

법인의 세율 인하가 2023년 귀속소득부터 반영된 결과

[표 3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: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(잠정)
과세특례 실적	3,271	3,347	4,230	5,113	3,289
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

(2) 추계방법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우선 2020~2023년간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을 조정한 후, 2020~2024년간 조정실적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향후 세수 효과 추정

- 2023년 법인세 신고자료 기준 과표구간별 조합법인의 특례실적은 다음과 같음

[표 4] 조합법인의 과표구간별 과세표준, 세율 및 산출세액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개)	과세표준 (억원)	과세특례 적용		과세특례 미적용		세수효과 (A-B)
			세율 (%)	산출세액 (A, 억원)	세율 ¹⁾ (%)	산출세액 (B, 억원)	
합 계	4,215	59,145	-	6,053	-	11,167	-5,113
2억원 이하	1,181	618	9	56	10	62	-6
2~20억원	2,273	19,307		1,740	20	3,407	-1,666
20~200억원	753	37,307	12	4,032		7,311	-3,279
200~3,000억원	8	1,913		225	22	387	-162

주: 1) 2023년 신고분은 2022년 귀속소득을 기반으로 신고됨에 따라 세법개정 이전의 세율이 적용되며, 중간
예납분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고 가정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년 과표구간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일반법인의 세율인하에 따른 특례 실적을 조정
 - 2023년 자료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표구간별 1인당 과세표준을 통해 세법개정 전후의 일반법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

[표 5] 2022년 세법개정 효과에 따른 특례 미적용시 산출세액 조정내역: 2023년 신고기준

과표구간별	법인수 (A,개)	과세표준 (B,억원)	1인당 과세표준 (C=B/A, 억원)	특례 미적용시					
	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		세율 (D,%)	산출세액		세율 (D',%)	산출세액	
					1인당 (E=C ×D, 억원)	전체 (F=E ×B, 억원)		1인당 (E'=C ×D', 억원)	전체 (F'=E' ×B, 억원)
합 계	4,215	59,145	—	—	—	11,167	—	—	10,577
2억원 이하	1,181	618	0.5	10	0.05	62	9	0.04	56
2~20억원	2,273	19,307	8.5	20	1.6	3,407	19	1.5	3,215
20~200억원	753	37,307	49.5		10.5	7,311		10.0	6,938
200~3,000억원	8	1,913	239.1	22	55.0	387	21	52.3	368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이를 바탕으로 특례실적을 조정할 경우, 2023년 기준 11.5%의 실적이 하향 조정

[표 6] 조합법인 과세특례 실적 조정: 2023년 신고기준

(단위: 억원, %)

	특례적용시 산출세액(A)	특례 미적용시				실적조정을 ([C-E]/C)
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전		'22년 세법개정 효과 조정후		
		산출세액(B)	특례실적 (C=A-B)	산출세액(D)	특례실적 (E=A-D)	
산출세액	6,053	11,167	-5,113	10,577	-4,524	-11.5

자료: 국세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3년 기준으로 2020~2023년간 감면실적을 조정하여 살펴보면, 최근 5년간 특례 실적은 연평균 3.2% 증가함

[표 7]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실적 조정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	2020	2021	2022	2023	2024 (잠정)	연평균 증가율 ('20~'24년)
특례 실적	조정전(A)	3,271	3,347	4,230	5,113	3,289	—
	조정후 (A×[1-11.5%])	2,894	2,961	3,743	4,524	3,289 ¹⁾	3.2

주: 1) 2024년 실적은 세법개정이 적용된 2023년 귀속소득을 바탕으로 발생
자료: 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추정

- 향후 세수효과는 2024년 잠정실적에 최근 5년 연평균 감면실적의 증가율 (3.2%)을 반영하여 추계

[표 8] 조합법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
세수효과	-3,620	-3,738	-3,859

(3) 추계결과

-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할 경우, 법인세는 2027년 3,620억원, 2029년 3,859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3년간 총 1조 1,217억원 (연평균 3,7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9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7~2029년, 법인세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72조)	-3,620	-3,738	-3,859	-11,217	-3,739

나.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

(1) 조세지출 실적

- 조합 등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709억원 등 2020~2024년 연평균 634억원(9.6% ↑) 수준

[표 10]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	2021	2022	2023	2024 ¹⁾	2년 평균 ²⁾	5년 평균 ³⁾
조세감면액	492	491	611	868	709	789	634
(증감률)	(△37.2)	(△0.2)	(24.4)	(42.1)	(△18.3)		(9.6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3~2024년 평균

3) 2020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-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789억원)을 기준으로 함
 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 -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배당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 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28년 9%p, 2029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 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29년은 5%, 2030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11]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연도별 배당소득세 세율
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
현행(A)	5	9	9	9	9
개정안(B)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4	0

- 2023년~2024년 배당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789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56억원(789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29년

4년간 총 1,521억원(연평균 380억원)으로 예상

[표 12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9년,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 출자금 비과세 연장 (안 제88조의5)	-282	-507	-507	-225	-1,521	-380

다.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

(1) 조세지출 실적

□ 조합 등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은 2024년 1조 1,647억원 등 2020~2024년 연평균 5,725억원(27.8% ↑) 수준

[표 13]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조세지출 실적: 2020~2024년

(단위: 억원, %)

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 ¹⁾	2년 평균 ²⁾	5년 평균 ³⁾
조세감면액	4,372	3,269	3,113	6,226	11,647	8,937	5,725
(증감률)	(△13.9)	(△25.2)	(△4.8)	(100.0)	(87.1)		(27.8)

주: 1) 상반기 실적을 기반으로 한 정부 전망치

2) 2023~2024년 평균

3) 2020~2024년 평균

자료: 기획재정부, 각 연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에 따른 향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(2023~2024년) 평균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변동적이므로 일몰연장 세수효과는 최근 2년 평균(8,937억원)을 기준으로 함
 - 2024년 전망치에 2024년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추계에 반영
- 현재 조세지출 실적은 이자소득세율 14% 수준을 기준으로 하므로, 개정안에 따른 각 연도별 세율 변동폭을 감안하여 추계

- 일몰연장으로 인한 세율 변동폭은 2026년 5%p, 2027~2028년 9%p, 2029년 4%p이며, 동 차이 만큼 세수효과 발생
- 개정안에 따르면 2026~2028년은 비과세이므로 세율 0%, 2029년은 5%, 2030년 이후는 9% 적용

[표 14]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연도별 이자소득세 세율
(단위: %, %p)

	2026	2027	2028	2029	2030
현행(A)	5	9	9	9	9
개정안(B)	0	0	0	5	9
소득세율 변동폭(B-A)	△5	△9	△9	△4	0

- 2023년~2024년 이자소득세율이 14% 수준일 때 평균 조세지출액이 8,937억원이므로,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으로 환산하면 683억원 (8,937억원/14%)으로 볼 수 있음
 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해 100분의 14 세율 적용
- 따라서 상기 세율 1%p 당 조세지출 실적액에 각 연도별 세율 차이를 곱하여 세수효과 추정

(3)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일몰 적용기한을 2025년말에서 2028년말로 연장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6~2029년 4년간 총 1조 7,235억원(연평균 4,309억원)으로 예상

[표 1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6~2029년, 소득세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누적	연평균
조합 예탁금 저율과세 연장 (안 제89조의3)	-3,192	-5,745	-5,745	-2,553	-17,235	-4,309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